

●여성가족부고시 제2024-55호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6조제4항에 의하여 "2025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"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27일

여성가족부장관

2025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거 "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"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)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.

유형	'25년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)	시간제(원/시간)	
		정부지원	본인부담
가형	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	15,370원	무상
나형	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	10,760원	4,610원

제3조(본인부담금 적용제외)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다문화가족 중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4조에 따른 섬·벽지 지역 거주자
- ②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
제4조(고시 이외의 사항) "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"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"가족사업안내(지침)"에 의한다.

부칙

제1조(적용기간) 이 고시는 2025.1.1.부터 2025.12.31.까지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2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(여성가족부고시 제2023-60호), 202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중 정정(여성가족부고시 제2024-07호)은 폐지한다.